송도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4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2BL) | 대표번호 **1551-3300**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사전접수는 **'견본주택 방문접수'로만 진행합니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견본주택 운영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기간 : 2026. 11. 19.(목) ~ 11. 21.(토), 3일간 10:00 ~ 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6)
- 준비서류는 아래 'Ⅲ.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작성 및 발급 서류상 인감(직인) 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인 및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단,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시 자격 입증 서류 및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고,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본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은 불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 개요

1) 공급 규모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44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18층~29층 7개동 총 5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 택 형** : 84Am²: 160세대, 84Bm²: 48세대, 84Cm²: 96세대, 84Dm²: 192세대, 84Em²: 96세대

■ **입주시기** : 2030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총 61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분양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등은 미정**이며, 추후 분양승인 완료 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세대수 배분(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85㎡이하 민영주택 10% 범위 내 공급 (단위: 세대)

구분	주택형	총세대수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배정세대수	예비자
송도RC2블럭 (송도동 544번지)	84A	160	16	80
	84B	48	5	25
	84C	96	10	50
	84D	192	20	100
	84E	96	10	50
	합 계	**592**	**61**	**305**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공급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통지 예정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제26조의2 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Ⅱ 공급 일정(예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접수		26년 11월 19일(목) ~11월 21일(토) [3일간]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1, 16번지(당사 견본주택) ※운영시간 : 10:00 ~ 16:00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제출, 미비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예정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26년 11월 27일(금)	일간신문 및 당사홈페이지(https://송도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com/)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26년 12월 01일(화)	개별 SMS 통보 예정
	특별공급 청약접수	26년 12월 07일(월)	인터넷 청약 신청(청약홈(PC/스마트폰) 09:00~17:30)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6년 12월 15일(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계약 체결	26년 12월 28일(월) ~ 12월 30일(수)	당사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6 일정 및 시간은 당사 홈페이지(https://송도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com/) 또는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특별공급 사전접수와 관련한 서류일체는 해당 기간 내 방문접수를 통하여 접수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 내 서류 미접수 및 서류 미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인•허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사업주체 분양사업소 또는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특별공급 사전접수 구비서류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을 사전접수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공통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1부	재직회사	• 재직회사 발급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사업자등록증 1부	재직회사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사업자등록증 하단부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여부 : 여(V) 부() 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된 종된사업장 명세]도 함께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재직회사	•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재직기간 명시(필수)**
	○		인사기록카드 1부	재직회사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재직한 기간 확인**(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본인	• 소속업체 인감 날인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	**• 소속업체 인감 날인 후 제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분양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참고)
	○		무주택 서약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분양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참고)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당사 분양홈페이지 고시문/안내문참고)
	○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 이름, 청약예치금 및 청약통장 가입일 및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 이용시간 09:00 ~ 17:30)**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기준 예치금 충족 시 청약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 팩스 또는 인터넷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발급)
내국인	○		신분증 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모바일 신분증 제출 불가)** ('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용도:주택공급신청용) **- 온라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제출가능**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가능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날인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 전체포함 세대구성 및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1부**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원 전체포함 (상세발급)
동점자 발생시 부양가족 산정위한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제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서류발급일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부양가족 제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서류발급일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본인	**•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본인	**• 재외동포 신청의 경우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재직회사	• 법인 신청의 경우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재직회사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 불가) - 단, 외국인은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6.11.27.(금)(예정) 3개월 이내** 발행분 (세대 구성원 변동 시 변동된 날 기준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접수 가능합니다.**(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및 미기재, 서류 위.변조 등으로 인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제외, 청약 신청분의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 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Ⅳ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8조 및「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외국인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및광역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입니다.

※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합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하여 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분양권 등")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table>
<tr><td>검색 대상</td><td>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td></tr>
<tr><td>주택의 범위</td><td>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및 분양권등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td></tr>
<tr><td>주택처분 기준일</td><td>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td></tr>
<tr><td>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td><td>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
<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
<tr><td>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td><td>85㎡ 이하</td><td>5억원</td><td>3억원</td></tr>
</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합니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td></tr>
</table>

V 대상자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 방법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적용기준 나목을 적용합니다. (본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

제8조(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세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공고일 기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해당기업의 장기근속(경제자유구역 내 연속하여 근무)한 자
3. 공고일 기준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자
4. 주민등록법상 인천지역에 주소를 두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 거주한 자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당첨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미신청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주체는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홈페이지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일까지 게시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및 탈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결과를 통보합니다.

VI 유의사항

■ 상기 특별공급 사전 접수와 관련한 서류 일체는 해당 기간 내 **방문 접수만 인정**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 외 타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신청한 경우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구비서류 중 재직확인 서류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일 이후 사업주체에 통보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격자로 판명된 분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주택소유사실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가 소멸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을 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청약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청약자 본인에 한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 2순위)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공급 청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 확정자, 예비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선정된 타입 외 다른 타입 청약 시 당첨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주택은 계약취소가 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자격요건 확인 시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 미제출 시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타 지역으로 발령(인천경제자유구역 외 지역) 또는 이직 등으로 인하여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미충족 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1) 종전 기업의 근무 기간과 현재 기업의 근무 기간 합산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A)에서 6개월간 근무, 이직하여 현재 동 구역 외국인 투자기업(B)에서 10개월 근무 → (B)기업 근무기간만 인정
예2) 타지역의 지사로 발령받은 근무자는 신청 불가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또는 재직 기간 삭감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A)에서 10년 근무, 3개월 전 타지역 지사로 파견, 발령받아 근무한 경우 → 신청불가
: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A)에서 10년 근무, 타지역 지사로 파견 갔다가 2년 전 복귀 → 2년 인정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5.06.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참고자료

견본주택 위치도	비고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1, 16번지 **사전 방문접수** 2026. 11. 19.(목) ~ 11. 21.(토) 10:00 ~ 16:00 (3일간) **홈페이지** https://송도대광로제비앙모아엘가.com/ **분양문의** 1551-3300



※본 홍보물의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 및 일정은 당사와는 무관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소속업체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소	인천광역시 전입일 :		
연락처	자택 : () -	휴대폰 : -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책 및 직위**	
소재지 주소			☎
경제자유구역 근무기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년 월		

2. 가족사항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구성 전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부양가족 해당여부

※ 가족 수가 많은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3. 주택 특별공급 신청내역

구역 및 지구	신청주택형	비 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11공구 RC2BL	☐ 84A	☐ 분양
	☐ 84B	☐ 분양
	☐ 84C	☐ 분양
	☐ 84D	☐ 분양
	☐ 84E	☐ 분양

(※한 가지의 주택형만 "V"표시)

4. 첨부서류

공통서류	확인	내국인	확인	외국인	확인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대조 필)**	☐	1. 신분증 **(사본)**	☐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2.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 필)**	☐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3.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신청의 경우)**	☐	3. 인감도장 **(날인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서명)**	☐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청의 경우)**	☐	4.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5. 재직증명서 **(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	☐	5.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 한합니다)**	☐		
6. 인사기록카드 **(원본대조 필)**	☐	6.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7.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	☐	7.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8.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소속업체 사용인감 날인)**	☐	8. 동점자발생 시 부양가족 산정을 위한 추가서류 **(※ 발급 시 안내문 참조)**	☐		
9. 무주택서약서 **(신청인 본인 인감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 서명)**	☐				
10. 청약통장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부동산원 → 청약통장 가입내역** **→ 인쇄 / 이용시간 09:00 ~ 17:30)**	☐				
11.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	☐				

※ 확인란 "□" 칸에 "V"로 표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 _____ **신 청 인 :** _____ (인)

위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소 속 업 체 : 소속업체명 (소속업체 날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붙임 2

무주택 서약서

신청아파트	송도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성 명	(인)	신청주택형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상기 본인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 및 과거 당첨사실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 등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다른 분양주택 청약 제한) 및 동·호 배정을 받더라도 계약체결 불가 등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확 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11.27.(금) 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 '2018.12.11. 이후 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취득도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특별공급 안내문 참조)	**(인)**
- 과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인)**

2026년 월 일

상기 서약서 상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신청 시 신청인 : (인)

대리 신청 시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를 확인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 시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주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항목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개인정보 및 제출된 서류 일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목적	"송도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접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3년 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철회 전까지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거절하실 수 있으며, **거절하실 경우 특별공급 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신청자 본인 성명) (본인 인감날인)